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특별회계법안 검 토 보 고

〈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36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배경 및 필요성 검토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8
3.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안 제1조)	9
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안 제2조)	9
다. 세입, 세출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0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13
마. 차입금, 이월 등(안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7
바. 부칙	18
사. 관계기관 의견	20
[참고자료]	2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등 2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6.
3. 회부연월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

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의 시·도 지원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권리·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5년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한편,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을 통해 2026년도 교육세 세제 개편안¹⁾과 연계하여 국세 교육세를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신규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관련 현행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표준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하여 국정과제 소요에 활용함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교육세 세입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우선 예산 편성 후 나머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교부금에 각각 50% 편성하는 구조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²⁾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의 60%는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안) 개요]

❶ 국세교육세 구조 개편

- (현행) 교육세(2025년 6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1.7조) 이후 잔액의 5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2조), 그 나머지를 교부금(2.2조)에 전출
- (개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

❷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 (유효기간 연장) 안정적인 고특회계 운영 및 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유효기간을 5년(∼30년) 연장(부칙 제2조 개정)
- (세입 조정)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 의무자(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 세입(전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

❸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추진

- (추진배경)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보육을 전담하는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필요, 이원화된 재원(일반회계 및 유특)을 통합하고, 국정과제 사업 지원
- (세출) 기존 유특회계 사업, 일반회계 보육사업 및 신규 유보통합 국정과제 등
- (세입) 금융보험업분 이외 교육세 중 60% 전입, 기존 국고지원분 일반회계 전입

* 자료: 교육부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025호)에 따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 의무자(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하고 있음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 변화(안)]

	2025년	2026년	
유·초·중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1조)	영유아특별회계(9.2조)	영유아·초·중등
	일반회계 전입 등(1.4조)	일반회계 전입 등(6.6조)	
	교육세 전입(1.7조)	교육세 전입(2.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72.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71.7조)	
	내국세 전입(69.8조)	내국세 전입(70.7조)	
	교육세 전입(2.6조) '25년 전입 2.2조 + '23년 정산 0.4조	교육세 전입(1.0조) '26년 전입 18조 + '24년 정산 약 -07조	
고등·평생교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6.4조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7.1조원)	고등·평생교육
	교육세 전입(2.2조)	교육세 전입(2.0조)	
	일반회계 전입 등(14.2조)	일반회계 전입 등(15.1조)	

*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영유아특별회계는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과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보육사업으로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신설하는 국정과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세³⁾로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함으로써 특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나, 재정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심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 전출·전입의

3) 단,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므로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가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내부거래에 따른 재정활동의 투명성 저하 및 한시적 시한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재정체계를 왜곡시키는 단점이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⁴⁾은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특별회계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영유아 대상 보육사업(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2024.6.27.) 받은 사업)을 포괄하는 체제로 확장함으로써 유보통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특별회계 신설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참고자료1: 특별회계 운영 현황 >

-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 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로 추진되었음.
- 이에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3.1.30.) 하고, 「영유아교육·

4)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23.4.4.)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 (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교육부 이관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24.6.27.)을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참고사항으로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와 함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⁵⁾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음.

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9.3. 정부 제출, 제2212660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02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3502호, 제2214026호)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영유아특별회계법”으로,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및 예비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3: 영유아특별회계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비교 >

[제정안의 구성]

	세부 조문
본 칙	제1조(목적),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3조(세입) 제4조(세출)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부 칙	제6조(차입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예비비)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법의 목적 규정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이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정안은 입법취지에 따라 그 목적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32조⁶⁾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교육부장관을 특별회계 운용·관리주체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 세입, 세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신규 국정과제 사업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과 국고로 지원하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함에 따라 제정안 제4조(세출) 제1호 및 제2호에 이를 반영하였고,

정부의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안)에 따라 교육세 세입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우선 예산 편성하던 것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의 60%를 영유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2항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2: 교육부 예산의 부문별 비중 >

[영유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구성안]

(단위: 억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현행	① 누리과정 지원(교육세+국고)	31,020	28,386	31,519	31,682	32,103
	유치원분(교육세)	17,052	15,809	16,452	16,349	16,570
	어린이집분(국고)	13,968	12,577	15,067	15,333	15,533
	② 보육사업(국고)**	53,361	59,144	67,425	70,878	75,474
신규, 국정 과제	③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교육세)	-	4,703	6,961	6,961	6,961
	④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교육세)	-	3,262	3,334	3,434	3,537
	⑤ 그림의연장형교사지원(교육세)	-	365	365	365	365
	소 계	-	8,331	10,659	10,759	10,862
합계	교육세	17,052	26,380	27,111	27,108	27,432
	국 고	67,329	65,853	84,207	87,996	92,866
	총 계	84,381	92,233	111,318	115,104	120,298

* '26년 정부안(국회 제출), '27년 이후는 중기계획 요구값, ④·⑤는 ②와 중복 포함

** 일반회계(국고)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사업(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관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 자료: 교육부

이를 통해 각 개별법⁷⁾에 규정된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과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보육사업으로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영유아특별회계 세출 사업]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제2213036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비고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1호) 3-5세 누리과정+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국정과제) 소요 비용 반영 · (제2호) 일반회계(국고) 지원 어린이집 보육사업 소요 경비 반영

7)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를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비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및 제5항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영유아 대상 보육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인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 시·도지사는 지방비와 함께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보조금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 및 시·도지사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임.

[영유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제2213036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u>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u>관하여 시·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를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u> ③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비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25년도 기준 일반회계(국고) 사업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9)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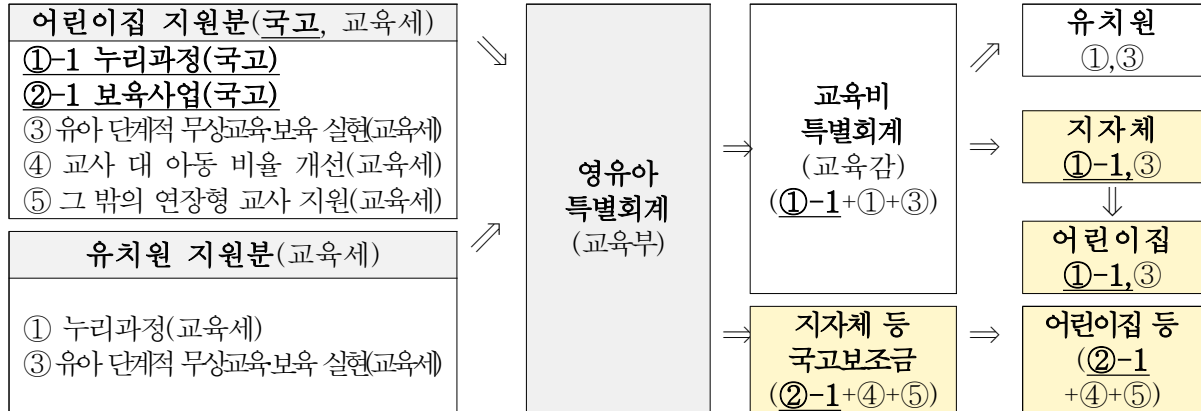
이는 각 개별법에 따라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참고

육청(교육감)이 관장하나,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감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¹⁰⁾

-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그 집행에 있어 유치원 지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에 직접 집행(①, ③)하나, 어린이집 지원은 누리과정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시·도지사를 통해 집행(①-1, ③)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 시·도지사가 지방비와 함께 어린이집에 집행(②-1, ④, ⑤)하는 구조임.

[영유아특별회계 예산지원 구조(2026년 예산안)]



* 자료: 교육부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7. (생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
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관련 논란을 종식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의결(’16.12.3.)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의 적절성 논란을 해소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의 재원을 국고로 마련할 것인지 교육세로 마련할 것인지 등 재원확보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24.6.27.)에 따른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¹¹⁾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후 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음.

11)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교육부(’24.6.27.) 참고

①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①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②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③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마. 차입금, 이월 등(안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제정안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차입금,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통상 특별회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에 두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바. 부칙

- 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제2조에서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두어 한시적으로 5년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편, 제정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9.3. 정부 제출, 제2212660호)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¹²⁾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었음.

현재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정부)은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폐지와 일반회계(국고)로 운영하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동하여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12)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정안 부칙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통해 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연내 제·개정 완료될 경우 특별회계가 도입되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제정안의 시행일을 일치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¹³⁾

- 아울러, 제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3조에서부터 제5조에 경과조치 등을 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13) 참고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칙에서 이 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및 2022년에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또한, 2025년 일부개정(2025.8.14.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바 있음.

사. 관계기관 의견

- 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분산된 중앙부처의 회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제정안에 대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이견없음)	○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분산된 중앙부처의 회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 - 안 제4조(세출) 관련, 세출 사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수행하던 ‘공통 교육·교육과정 지원(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에 더하여 국정과제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지원하는 근거로 제1호 신설 타당,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유특회계와 국고로 이원화된 영유아교육·보육 재원을 통합할 계획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근거인 제2호 신설 타당 ○ 부칙 제2조(유효기간) 관련, 영유아특별회계를 우선 한사회계로 도입하여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행하고 유보통합 논의가 진전된 후 상설회계 추진이 바람직하므로 유효기간 5년 지정은 적정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일부수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 신중검토 ○ 현행 ‘유특회계법’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며, 유보통합 3법이 제류 중인 상황에서 제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 안 제4조(세출) 제1호 관련,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삭제 -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범위를 ‘공통 교육·보육과정’에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법제화(의무교육 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필요 ○ 안 제4조(세출) 제2호 관련, 제1호의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중복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과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

	< 울산광역시교육청 > 신중검토 ○ 영유아특별회계 시행시기 관련 보육사무의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이후에 법령 제정 필요 ○ 안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관련, 지방차원 유보통합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비에 대한 매칭예산 및 특수시책 사업예산 전입 근거 마련 또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법정 교부율로 보장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일부수정 ○ 안 제4조(세출) 제3호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신설 필요 - 유보통합 2·3단계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의 통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조항을 신설하여 제정 근거 마련 * ① 학부모 부담경비(급·간식비 및 특성화비) 지원, ② 교원 처우개선비, ③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인건비, ④ 시설 표준화를 위한 확충비, ⑤ 기관 확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 < 세종, 충북, 울산교육청 > 일부수정 ○ 부칙 제2조(유효기간) 관련, 유효기간 삭제 및 상설화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및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갈등 혼란 방지 - 재원의 불안정성 해소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신중검토)	○ 안 제4조(세출) 제2호 삭제 필요 - 유치원(유아교육), 어린이집(돌봄 및 보육)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한 회계에서 통합관리할 경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제4조제2호 삭제 필요 ※ 세출항목간 재원배분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보육예산 확대시 유치원 교육 예산 축소 우려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1

특별회계 운영 현황(2025년 9월말 기준)

구분	회계명	근거법	소관부처	설치연도	'25년 예산 (억원)
기타 특별 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회계법」	과기정통부	'83	11,05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회계법」	농식품부	'92	150,173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부, 해수부	'94	155,572
	등기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법」	대법원	'94	2,78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회계법」	산자부	'95	63,05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국방부	'04	5,7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행복도시법」	행복청	'05	2,20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시설이전회계법」	국방부	'07	15,00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아시아문화도시법」	문체부	'07	1,2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법」	국토부	'07	2,049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작업법」	법무부	'10	1,237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12	73,46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17	31,02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산자부	'20	22,84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23	166,6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기재부 등	'23	147,440
기업 특별 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	농식품부	'61	27,925
	우편사업특별회계		과기부	'61	53,784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61	7,37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과기부	'61	57,8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법」	특허청 등	'99	12,677

※ 2025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025년 11월 현재 특별회계 중 유효기간(일몰)이 있는 회계는 7개임

* 자료: 교육부

□ 특별회계 중 유효기간(일몰)이 있는 회계(7개) 목록

회계명	일몰 근거	기한
등기특별회계	부칙(법률 제4549호) 제2항	2027회계연도까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부칙(법률 제7271호) 제2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칙(법률 제8149호) 제2조	2030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부칙(법률 제7992호) 제2조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부칙(법률 제14395호) 제2조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부칙(법률 제16859호) 제2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칙(법률 제19202호) 제2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자료: 교육부

참고 2

교육부 예산의 부문별 비중(추경 포함) (2025년 9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 총지출	101,997,888	100,561,515	104,868,403	104,985,836	102,626,370
○ 예산	95,993,631	94,387,307	98,089,605	98,205,305	95,845,839
○ 기금	6,004,257	6,174,208	6,778,798	6,780,531	6,780,531
【교육분야】	96,015,758	89,566,518	98,182,225	98,299,658	95,940,192
▪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911,994	73,729,047	81,380,742	81,380,742	79,493,7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68,873,209	72,279,438	72,279,438	70,281,20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210,631	3,102,013	3,102,013	3,102,013
▪ 고등교육	13,513,495	14,477,200	15,549,100	15,666,533	15,194,084
▪ 평생·직업교육	1,440,683	1,216,239	1,102,260	1,102,260	1,102,26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01	15,041,182	15,863,472	15,979,172	15,506,723
▪ 교육일반	149,586	144,032	150,123	150,123	150,123
【사회복지분야】	5,982,130	10,994,997	6,566,128	6,566,128	6,566,128
▪ 기초생활보장	157,313	160,399	165,171	165,171	165,171
▪ 공적연금	5,824,817	6,061,916	6,400,957	6,400,957	6,400,957
▪ 사회복지일반	-	2,537	-	-	-
▪ 아동·보육	-	4,770,145	-	-	-
【보건분야】	-	-	120,050	-	-
▪ 보건 의료	-	-	120,050	-	-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수입

* 자료: 교육부

참고 3

영유아특별회계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비교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제2213036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를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비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